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2. 7 선고 2021가단670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, 윤지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유지현

변 론 종 결 2022. 11. 15.

판 결 선 고 2023. 2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3,290,122원 및 그 중 82,808,550원에 대하여 2021. 5. 25.부터 2021. 10. 8.까지는 연 6.4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C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은 2016. 10. 18. 설립된 후 김천시 D 임야 18,041㎡를 대금 2억 7,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. 소외 회사는 2016. 10. 27. 원고로부터 2억 7,000만 원을 대출받았고(원금 변제기: 2021. 10. 27.), 같은 날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,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,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같은 날(2016. 10. 27.)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3억 5,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보증'이라 한다).

다. 소외 회사는 이자 연체로 2019. 8. 10.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9. 11. 14. 위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(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), 원고는 2021. 5. 24. 221,969,390원을 배당받았다. 이는 그때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4,777,940원, 그리고 원금 중 187,191,450원에 각 충당되었고, 이후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6.45%이다.

라. 한편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F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,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가 이를 곧 갚기로 하였는데, 원고는 2021. 6. 17. 이 사건 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(경북 성주군 G 토지 등)을 가압류하면서(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카단643) 그 비용으로 481,572원을 지출하였다.

[증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2, 제14, 15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3,290,122원{= 대출원금 82,808,550원(= 2억 7,000만 원 - 187,191,450원) + 채권보전조치비용 481,572원} 및 그 중 대출원금 82,808,550원에 대하여 위 배당 다음 날인 2021. 5. 25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1. 10. 8.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6.4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 요지

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이 사건 보증은 피고의 퇴사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인데, 피고가 2017. 12. 4.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.

뿐만 아니라 피고는 당시(2017. 12. 4.)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를 H에게 넘겨주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, H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.

나. 판단

1)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이 피고의 퇴사를 해제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.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또한, 을 제1호증의 기재,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피고가 2017. 12. 4.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부 J에게 양도하고,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, ② 같은 날 H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(1인 사내이사)로 취임한 사실, ③ 당시 피고는 원고의 담당 직원인 I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변경된다는 것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,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,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거나, 원고의 동의 내지 승낙 하에 이 사건 보증채무를 다른 사람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㉠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30675 판결 참조).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여신거래는 오로지 이 사건 보증계약 당일의 위 대출뿐인바, 이 사건 보증계약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정근보증 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,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

보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, 따라서 피고가 대표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.

㉠ 더욱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(원고가 피고의 퇴사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,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 사실을 고지한 것을 두고 이 사건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까지 보기는 어렵다).

㉡ 당시 원고의 ‘여신업무방법서’(갑 제8호증)는 “법인여신을 취급할 경우에는 신용 및 자산이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·경영하고 있는 자(최대주주, 대표이사 등) 중 1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바(제237조), 만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이 사건 보증채무의 면책적 인수 등의 요청을 받았다면, 원고로서는 피고를 대신할 새로운 보증인이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, 단지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보증인 교체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.

㉢ 소외 회사가 2017. 12. 27. 이자를 미납하자, 원고는 H가 아닌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현경